

條例(案) 檢討報告書

이천시해외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(안)

○ 提案理由 및 檢討意見

. 본 제정조례안은 국제협력 및 통상교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교류지역 한인사회, 지도층 인사를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위촉하여 시에 통상 관련 방문단의 활동주선과 안내등 현지활동 지원과 시에서 생산 유망품목의 현지홍보 및 판매망 연결등 시장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통상증진 및 교민사회와의 유지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등 조례 제정의 목적이나 명예국제협력관 임무 및 위촉대상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